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992-11호(심의일: 2024.12.27)

(유효기간: 2024.12.30 ~ 2026.10.31)

# 「직장인우대적금」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1 상품명 및 특징

■ 상 품 명: 직장인우대적금

■ 상품특징: KB국민은행으로 급여이체를 받는 고객 및 KB국민카드 매입실적이 있는 고객 등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정액적립식 적금

### 2 거래 조건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제외)			
상품유형	■ 정기적금[(정액적립식 + 추가적립(보너스저축)]			
거래방법	■ 신규: 영업점, 인터넷뱅킹, KB 스타뱅킹, 고객센터 ■ 해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KB 스타뱅킹, 고객센터			
계약기간	■ 1년제, 2년제, 3년제			
가입금액 및 저 <del>축</del> 방법	■ 정액적립: 1 만원 이상 3 백만원 이하 원단위 ■ 추가적립: 월 정액적립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5 백만원 이하 원단위 ※ 저축일 현재 미납회차가 없는 계좌로 분기별 1 회에 한하여 만기 1 개월 전까지 저축가능 ※ 해당 분기에 적립하지 않은 횟수(금액)는 다음 분기로 이월되지 않으며, 추가적립은 정액적립 회차에 포함되지 않음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기본이율	■ 기본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약기간별 이율 적용			
(세금공제 전,	계약기간	1년	2년	3년
2024.12.30 기준)	적용이율	연 2.75%	연 2.95%	연 3.35%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우대이율 적용 ※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계약 기간동안 적용
- [1]직장인우대이율: 연 0.3%p
- 적용대상: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까지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sup>㈜</sup>」 또는 「30만원 이상 KB국민카드 매입 실적」이 발생한 월수가 1개월 이상인 경우 예시) 2021.10.31일 신규 시 실적인정 대상 기간
  - 2021.10월 ~ 2022.1월까지 4개월 중 1개월 이상 실적인정 여부 확인
  - ※ 월/달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합니다.
  - ※ KB국민카드 매입실적은 KB국민카드 사용전표가 KB국민카드사로 매입된 경우 인정됩니다.
  - ※ KB국민카드 매입실적 산정 시 기업카드 및 가족카드, 선불카드 매입금액은 제외됩니다.

#### ㈜ 급여이체 실적 인정기준

-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또는 대량이체 계약에 따른 급여성 선일자,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에 의한 급여이체 (단, 급여이체 인정금액은 건별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2]제휴통신사 우대이율: 연 0.1%p 또는 연 0.2%p
- 적용대상: 제휴통신사(KT)에서 발급한 "KB국민은행 금리우대 쿠폰"을 소지 후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이 전월에 KB국민신용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 · Qook 집전화 장기이용 고객: 연 0.1%p
  - · Qook 인터넷 장기이용 고객: 연 0.1%p
  - · Qook 집전화 + Qook 인터넷 장기이용 고객: 연 0.2%p
  - ※ KB국민카드 결제실적 산정 시 기업카드 및 가족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결제실적은 제외됩니다.
- 보너스저축 우대이율: 연 0.2%p
- 적용대상: <u>추가적립(보너스저축)</u> 금액에 대하여 최종이율에 연 0.2%p를 추가하여 만기해지시 지급
  - ※ 추가적립은 영업점 방문,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을 통해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자동화기기 및 다른은행을 통한 저축 불가)

- 금리우대쿠폰 : 이 적금의 신규 시 금리우대쿠폰을 적용한 경우 쿠폰 우대금리를 기본이율에 가산
  - ※ 금리우대쿠폰 우대금리는 신규 당시 적용한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르며, 세부 사항 (적용방법, 유의사항 등)은 금리우대쿠폰에서 확인 가능
    - ※ 금리우대쿠폰은 신규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중도해지시 미적용

최종이율
(세금공제 전,
2024.12.30
기준)

우대이율

(세금공제 전,

2024.12.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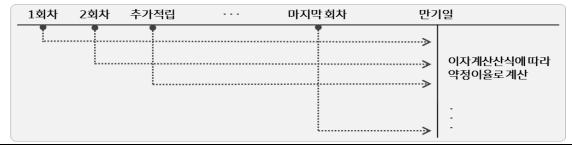
계약기간	1년	2년	3년
최종이율	최저 연 2.75% ~	최저 연 2.95%	최저 연 3.35% ~
	최고 연 3.25%	최고 연 3.45%	최고 연 3.85%

- ※ 최고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우대이율 중 직장인 우대이율 연 0.3%p 및 제휴통신사 우대이율 최고 연 0.2%p 모두 적용 시
- ※ 신규 가입 시 금리우대쿠폰을 적용한 경우 쿠폰 금리가 최종 이율에 가산됨

## ■ 정액적립분: {월저축금 × 계약월수 × (계약월수+1)/2} × (연이율/12)

- 추가적립분: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365
  -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만기이자 계산방법 (산<del>출근</del>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단위: 연%)

# 중도해지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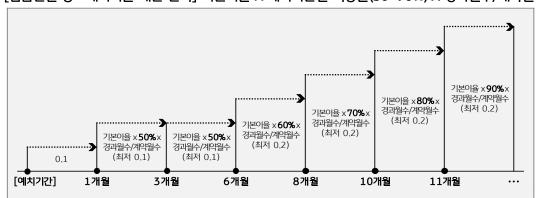
(세금공제 전, 2024.12.30 기준)

예치기간	이율
1개월미만	0.1
1개월이상 ~ 3개월미만	기본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1)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기본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1)
6개월이상 ~ 8개월미만	기본이율 X 6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8개월이상 ~ 10개월미만	기본이율 X 7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10개월이상 ~ 11개월미만	기본이율 X 8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11개월이상	기본이율 X 9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 1. 경과월수: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상
- 2. 계약월수: 1년제 12개월, 2년제 24개월, 3년제 36개월※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 3.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 [입금건별 중도해지이율 계산 산식] 기본이율 X 예치기간별 적용률(50~90%) X 경과월수/계약월수

### 중도해지이자 계산방법 (산<del>출근</del>거)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단위: 연%)

#### 만기후이율

(세금공제 전, 2024.12.30 기준)

경과기간	이율
만기후 1개월이내	기본이율 X 50%
 만기후 1개월초과 ~ 3개월이내	기본이율 X 30%
만기후 3개월초과	0.1
※ 이으의 소스저 들패 자리까지 표시(소스저 세패 자리에서 저사)	

*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내에서 정액적립 및 추가적립이 가능하므로 한도초과가 발생되지 - 아드로 유의하나의 내라나다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ul> <li>영업점, 인터넷뱅킹, KB 스타뱅킹,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가능</li> <li>※ 고객센터 통한 해지 시 만기해지만 가능하며 미성년자 예금 해지 불가</li> <li>※ 영업점에서 신규한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 해지는 영업점에서만 가능</li> <li>만기 자동해지 가능</li> </ul>		
	· · · · · · · · · · · · · · · · · · ·		
	■ 적용대상: 계약기간의 1/2 이상을 경과한 계좌로 계약기간 중에 이 적금 가입고객에게 다음 사유 발생 시		
	사 유 증빙서류(예시)		
	퇴 직 퇴직금 입금통장, 퇴직증명서		
	창 업 사업자등록증		
특별중도해지	결 혼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출 산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이 사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u> </u>	입 원 (3일이상) 입원확인서		
	l용방법: 특별중도해지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급한 증빙서류를 창구에 제시		
<b>■</b> 적성	■ 적용이율: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우대이율 제외)		
재예치 물	·?가		
일부인출 • 불기	<ul><li>불가</li></ul>		
만기앞당김 지급 • 모든	■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앞당김 지급 가능		
<b>질권설정</b> ■ 가능	• 가능		
<b>양도 및</b> ● 양년	·도 가능		
<b>담보제공</b> ■ 예급	■ 예금담보대출은 계좌잔액의 95%까지 가능		
	좌에 <mark>압류<sup>주1)</sup>, 가압류<sup>주2)</sup>, 질권<sup>주3)</sup>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mark>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b>이자지급 제한</b>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3)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3)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주 3	3)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주 3 <b>■ 예</b> 년	3)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	· · · · · · · · · · · · · · · · · · ·	
휴면예금 및 출연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에 출연 <sup>주)</sup>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주)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사용하지 않는 소액계좌를 잔고 이전/해지 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I	비스 이용 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여부	해 당 예금보험공사 <b>보호금융상품</b> 1인당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sup>주 1)</sup> 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 <sup>주 2)</sup> 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1)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주2) 해지요구서: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 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사항	■ 추가적립은 KB국민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을 통해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자동화기기 및 다른은행을 통한 추가적립 불가)		

##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이 상품은 KB 국민은행 수신상품부(P)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